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29

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: 박성준·한민수·박희승

정성호・윤종군・노종면

허 영ㆍ이소영ㆍ박홍근

민병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이자 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금리인상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 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이커지고 있어,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

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6억원"을 "9억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"6억원"을 "9억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 및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특별소득공제) ① ~ ④	제52조(특별소득공제) ① ~ ④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	5
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	
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	
대주(세대주가 이 항, 제4항 및	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제2	
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	
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	
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,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	
포함한다)가 취득 당시 제99조	
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	
가 <u>6억원</u> 이하인 주택을 취득	9 <u>억 원</u>
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	
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	
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	
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	
당차입금(주택을 취득함으로써	
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	
을 포함하며, 이하 이 항 및 제	
6항에서 "장기주택저당차입금"	

이라 한다)의 이자를 지급하였 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 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 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 항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 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(차입 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, 이하 이 항 및 제6항 에서 "공제한도"라 한다)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(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조합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. 이하

•				
<u>.</u>				
1. ~ 3. (현행과 같음)				
4				

이 호에서 같다)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이하 이 호에 서 "주택분양권"이라 한다)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 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 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 회사 등 또는 「주택도시기 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으로부터 차입(그 주택의 완 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 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 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에 는 그 차입일(차입조건을 새 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일을 말한다)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 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본다. 다만,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 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

9 <u>억 원</u>

적용하지 아니한다.	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⑥ ~ ⑪ (생 략)	⑥ ~ ⑪ (현행과 같음)